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시 정 요 구

제 목 정직·직위해제 처분자 등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

기 관 명 충청남도, 천안시, 공주시, 아산시, 계룡시, 당진시, 부여군, 청양군, 예산군, 태안군

내 용

충청남도는 2014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정직 및 직위해제 처분 후 복직자 및 휴직 복직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 복무조례에 따라 복직 당해연도의 연가 일수를 재산정해 연가를 허가하거나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였다.

「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15조, 제17조 및 시·군 복무조례 규정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에게 재직기간별로 연가일수를 부여하고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
그리고 같은 조례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및 시·군 복무 조례에 따르면 결근일수·정직일수·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,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.

[그림] 휴직자 연가일수 산정방법

$$\bigcirc \text{ 휴직자 연가일수} = \frac{(\text{12월} - \text{당해 연도 휴직기간})}{12\text{월}} \times \text{당해 연도 연가일수}$$

그런데 위 관서(9개 시군 포함)에서는 복무조례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정직일수, 직위해제 일수를 당해 연도 연가일수에서 제외했어야 하나 정직 및 직위해제 처분자 28명에 대한 연가일수 산정 시 해당 기간을 공제하지 않고서 연가일수를 산정함으로써 사용한 연가일수와 연가보상비를 합한 총 연가일수가 적정 연가일수를 초과하게 되었다.

또한 휴직 복직자 13명에 대해서도 복직 후 해당연도 연가일수를 산정하면서 직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간만큼 월할 계산해 연가일수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휴직 복직자 연가일수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사용한 연가일수와 연가보상비를 합한 총 연가일수가 적정 연가일수를 초과하게 되었다.

조치할 사항 충청남도지사, 천안시장, 공주시장, 아산시장, 계룡시장, 당진시장, 부여군수, 청양군수, 예산군수, 태안군수는

[시정] 정직·직위해제 처분 후 복직자 연가보상비 지급액 13명의 14,206,760원, 정직·직위해제 처분 후 연가를 사용한 18명의 98.6일에 상응하는 금액 및 휴직 복직 후 연가를 사용한 13명의 41.7일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조치 하고,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